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영창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대수선하여 취득 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확대하여 기업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 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저출산대책을 뒷받침하며
- 다.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령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감면 신설
 -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 및 대수선하여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다.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 장애인이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운영하는 당초 감면취지대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 동차 1대에 대하여만 장애인자동차로 인정
- 단서 조항 개정으로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

라. 하도급에 대한 용어정리로 감면대상 명확화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수급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용어 정비
- 하도급업자를 하수급업자로 수정

4. 검토결과

가. 도세감면조례 개정배경 및 추진과정

행정안전부에서는 개별법령의 개정사항, 중앙정부의 세제 정책 변화 및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지방세법 제9조2에 근거 한 시·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음.

- ▶ 도세감면조례 개정 추진과정
 - ∘행정안전부에서 감면조례 표준안 마련(2008.8월초)
 - ∘ 자치단체 의견 수렴(2008.9월초)
 - ∘감면조례 표준안 확정 및 자치단체 시달(2008.9월말)

충북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도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도세 감면대상을 검토·확정하여 금번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나. 개정조례안 항목별 개정내용 검토결과

※ 보고순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 순서로 하였음.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제2조제1항)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²⁾ 지방세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 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

[※]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의 감면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경우는 허가로 갈음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제2조,제3조)

- 최초로 신청하는 1대에 대한 구체적 감면규정 마련
 - 당초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신설하였으나,
 - 舊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행심 제2004-353호. '04.11.30)으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 발생
 - ※ 기존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 할 경우 이를 취득 · 등록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
 -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 조항 신설
-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추징 제외 사유 추가
 - 현재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장애인과 공동 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서로간의 등록전환의 경우에만 감면 추징을 제외하고 있으나,
 -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의 지분을 이전받은 경우에 도 감면 추징에서 제외되도록 사유 추가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 (제2조,제4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8조)

-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함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제8조3호)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5 천연가스 사용버스 관련 감면대상 명확화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현 규정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 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축소 해석 여지가 있음
- 천연가스 사용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당초 감면 취지대로 조문을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제12조제1항)

- 분양을 목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시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면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대상 명확화

하도급업자에 대한 용어 정리를 통한 감면대상 명확화 (제12조의2)

-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은「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수급인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운영현황에 맞도록 용어 정비
 - ※ '하도급업자'는 최종 하수급인을 배제하는 용어임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제3항)

「임대주택법」 (전부개정 법률 제8966호, 2008.3.21)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6.20)에 따라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아파트형공장 조문 분리, 감면대상 명확화 등 (제17조의2)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 추징제외 업종(제조업 공장 또는 벤처기업)을 입주 중소기업자와 동일하게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 적용
 - ※ 도세 감면조례를 특별·광역시세 감면조례 조문과 동일 정비
-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 구체화
 - 현재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 승계취득시' 감면제외로 명확히 규정

① 오지개발사업 관계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제18조제1항제3호)

-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폐지 법률 제9008호 2008.3.28)되면서, 「농어촌정비법」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동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

Ⅲ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현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 간출연비율만큼 감면을 제외하고 있으나,
- 현 감면조례상 제외규정 조문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일부 과세대상(부동산 및 전동차)에만 한정·적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감면 제외사유를 명확화

☑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제23조제1항)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법률 제7558호, 2005.5.31)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조문 삭제 (제25조)

○ 지방세법('08.1.1 시행) 및 동법 시행령('08.2.29 시행) 개정으로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 정비

Ⅰ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감면 신설 (제27조의2)

○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개축·대수선하는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 ※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 해소방안」으로 확정(국가경쟁력강화회의, '08.6월)

[I5]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신설** (제30조의4)

- 출산장려 및 다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 ※ 감면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과 동일

다. 종합의견

금번 개정안은 도세 감면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중앙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시키는 한편, 지방세 감면과 관련 하여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붙임 1. 주요 개정사항

2.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자료〉

주요 개정사항 (신설 2, 확대 1, 축소 1, 기타 11)

내 용	신 설	확 대	축 소	기 타
■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제2조 제1항)				0
■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제2조 제3항, 제3조 제1항)			0	
●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4조 제2호 및 제3호, 제15조 제1호 및 제2호,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1항)				0
●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제8조 제3호)				0
▶ 천연가스 사용버스 관련 감면대상 명확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0
▶ 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 명확화 (제12조 제1항)				0
● 하도급업자에 대한 용어 정리를 통한 감면대상 명확화 (제12조의2)				0
■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 제3항)				0
● 아파트형공장 조문분리, 감면대상 명확화 및 추징제외 업종 추가 (제17조의2)		0		
오지개발사업 관계 법률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제18조 제1항 제3호)				0
■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0
■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제23조 제1항)				0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조문 삭제 (제25조)				0
●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감면 신설 (제27조의2)	0			
■ 출산장려·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신설 (제30조의4)	0			